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ffice for Civil Rights • Washington D.C. 20201 • (202)619-0403

##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제504절(Section 504)에 의한 권리

## 제504절이란?

1973년 재활법의 제504절은 자격 있는 개인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을 보호하는 국가법입니다. 이 법의 차별금지 요건은 미국 보건복지부(DHHS)를 포함한 연방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단체와 고용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체와 고용주에는 많은 병원, 양로원, 정신건강 센터 및 복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제504절은 고용주와 단체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자들의 동등한 기회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04절은 장애자가 프로그램의 서비스 및 혜택을 이용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자

제504절은 장애가 있는 유자격자들을 보호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어이로 인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과거에 있었거나 이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주요 생활 활동에는 자신을 돌보거나,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일하기, 일반 손으로 하는작업 및 배우기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약물이나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장애에 대한 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AIDS, 알코올 중독, 시각상실 또는 시력 장애, 암, 청각상실 또는 청각 장애, 당뇨병, 약물 중독, 심장병 및 정신병.

서비스,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취지 하에서, 위에 정의된 사항에 충족되는 것 이외에 *장애가 있는 유자격자*는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고용이 목적인 경우, *장애가 있는 유자격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편의가 주어지는 경우 자신이 지원했거나수행하도록 고용된 직업의 기본적인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로 인해 한 개인에게 고용 차별이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항의는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로 회부되어 처리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의 편의*란고용주에게 지나친 무리함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 관리 및 복지 서비스 상황 하에서 금지되는 차별 행위

제504절의 차별 금지는 연방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는 단체들에 대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개방성, 제공, 고용 및 행정적 활동과 책임에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수취인/기관은 장애에 근거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기타 혜택들에 참여하거나 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 ✗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 ※ 신체적 장애가 없다면 받을 권리자 자격 조건이 되는 고용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즉 채용, 승진, 교육, 부가급부 혜택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이러한 금지와 기타 금지사항은 45 CFR 84부의 DHHS 제504절의 규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 항의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민권의 성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OCR의 직원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긴급 비상용 직통전화: 1-800-368-1019(음성) 1-800-537-7697 (청각 장애자용 원격통신)

전자우편: ocrmail@hhs.gov 웹 사이트: http://www.hhs.gov/ocr